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68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 요	3
가. 제정안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3
나. 김포시 연혁 및 현황	7
다. 서울특별시 행정체계 및 관할구역 연혁	8
2. 검토의견	10
가. 총 괄	10
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1
다.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	12
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경기도 김포시 → 서울특별시 김포구)에 따른 변동사항	15
(1) 자치권	17
(2) 지방재정	20
(3) 개별 법령	23
마. 부 칙	25
(1) 시행일, 조례·규칙·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
(2)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따른 변동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27
1) 처리사무(자치권) 및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27
2)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29
3)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1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35
[참고자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 인구 50만 이상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37
[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사례	41
[참고자료 4]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김포시 의뢰)	42
[참고자료 5] 김포시 등 서울근접도시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경기도 의뢰)	43
[참고자료 6]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의 GRDP 현황	44
[참고자료 7] 경기도 내 시·군별 서울특별시 통학·통근 인구 현황(2020년 기준)	45
[참고자료 8]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김포시의회)	4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태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9.
3. 회부연월일 : 2024.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²)은 일본 도쿄(2,188km²), 영국 런던(1,285km²)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간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

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의 약칭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 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가. 제정안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제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김포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기도의 김포시를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에 김포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구의 명칭	관할구역
김포구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김포시 일원
③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김포시 일원을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김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김포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북부 지역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도 구역 현황(경기도안)>

명칭	경기도 (28시·3군)		경기도 (20시·1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8시·2군)
지위	도		도	특별자치도
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u>김포</u> ,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군	양평, 가평, 연천		양평	가평, 연천

※자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이 되는 10개 시·군에는 김포시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의 행정적·자연적 경계 및 행정제1부지사가 김포시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도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의 업무분장을 고려했다는 설명임.

김포시는 경기도 중서부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으나, 인천광역시로 인해 경기남부지역과 분리되어 있고 파주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의 시·군과 함께 접경지역¹⁾에 포함되어 있음.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또한 김포시는 서울특별시와 연접해 있으며, 한강신도시²⁾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한편,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605km²로 도쿄(2,188km²), 뉴욕(783.8km²), 런던(1,285km²)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고, 1995년 광진구·강북구·금천구 신설 이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서울특별시의 확장이 억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과밀개발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및 도시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김포시의 지리적 특성과 서울특별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함으로써, 김포시의 행정구역과

-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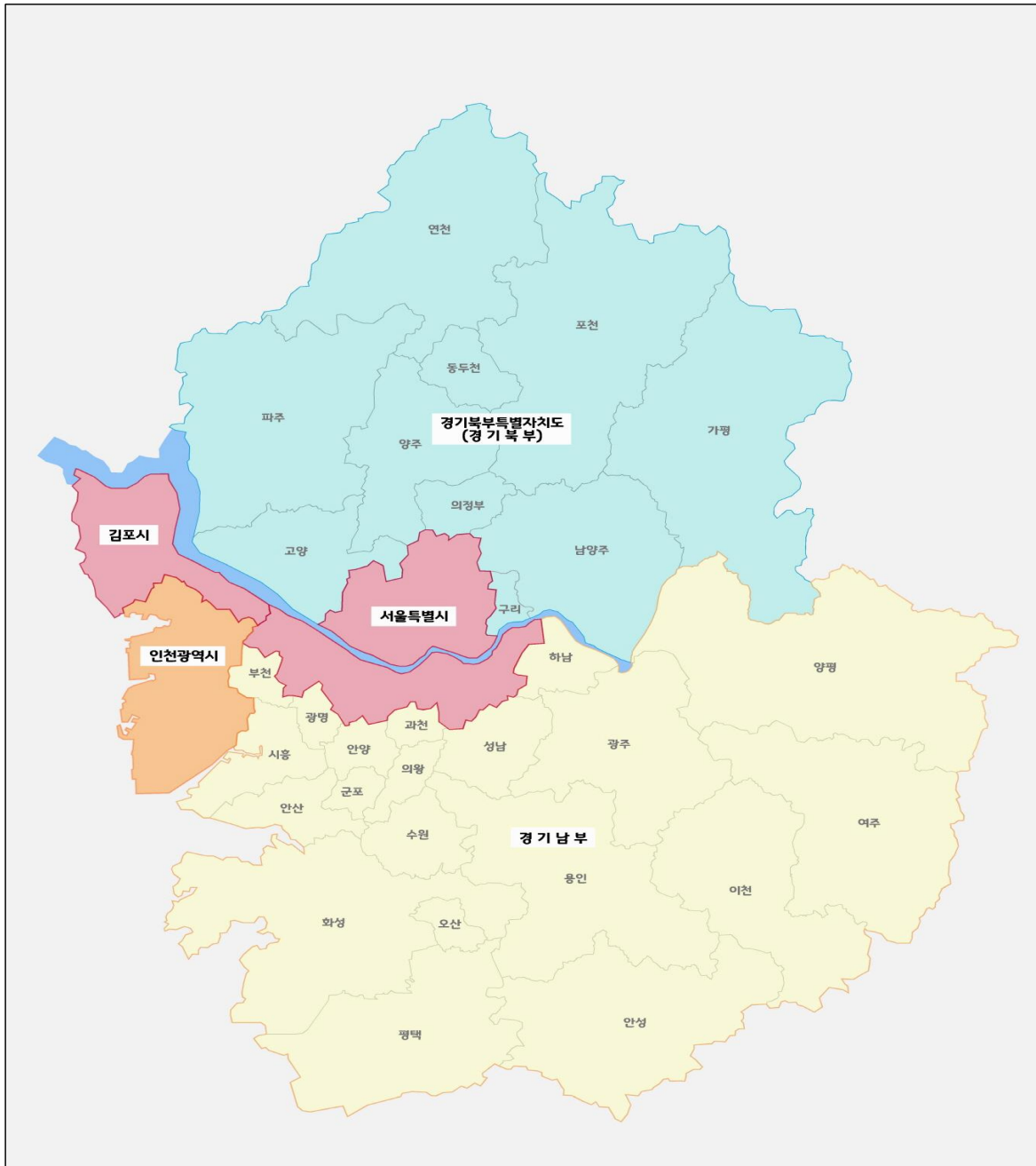
2. 강원도: 춘천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 2) 김포시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일대. 2023년 한강신도시 거주인구는 약 17만명으로 이는 김포시 전체인구(약 50만명)의 약 34% 가량임.

생활권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울특별시의 영역을 확장하여 ‘메가시티’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수도권 지도>



※자료: 김포시

나. 김포시 연혁 및 현황

김포시는 1914년 군내·검단·고촌·월곶·하성·양촌·대곶·양동·양서면 등 9개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김포군으로 시작되었으며, 1963년 양동·양서면(現 양천구·강서구 일부지역)의 서울시 편입, 1989년 계양면의 인천시 편입, 1995년 검단면의 인천광역시 편입, 1998년 김포시 승격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김포시 행정체계 주요 연혁>

- 1914. 03. 01. 김포·양천·통진현이 김포군으로 편입(9면)
- 1963. 01. 01. 양동·양서면이 서울시로 편입(7면) (대통령령 제1172호)
- 1973. 07. 01. 부천군의 오정면, 계양면이 편입(9면) (대통령령 제2597호)
- 1975. 10. 01. 오정면이 부천시로 편입(8면)
- 1979. 05. 01. 김포면이 읍으로 승격(1읍7면) (대통령령 제9407호)
- 1983. 02. 15. 통진면이 신설(1읍 8면) (대통령령 제11027호)
- 1989. 01. 01. 계양면이 인천시로 편입(1읍7면) (법률 제4051호)
- 1995. 03. 01.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1읍 6면) (법률 제4802호)
- 1998. 04. 01.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3동 6면) (법률 제5458호)
- 2003. 09. 01. 김포3동이 사우동, 풍무동으로 분동(4동 6면)
- 2004. 01. 01.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승격(1읍 5면 4동)
- 2009. 09. 01. 고촌면이 고촌읍으로 승격(2읍 4면 4동)
- 2011. 11. 14. 양촌면이 양촌읍으로 승격(3읍 3면 4동)
- 2012. 09. 24. 장기동 신설(3읍 3면 5동)
- 2013. 10. 28. 김포2동에서 구래동 분동(3읍 3면 6동)
- 2015. 02. 02. 김포2동에서 운양동 분동(3읍 3면 7동)
- 2017. 04. 18. 김포1동이 김포본동으로 행정동명 변경
- 2017. 04. 18. 김포2동이 장기본동으로 행정동명 변경
- 2019. 09. 23. 구래동에서 마산동 분동(3읍3면8동) (現 행정체계)

※자료: 김포시청 홈페이지

김포시의 행정구역, 인구 등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김포시 주요 현황>

구 분	김포시	경기도
행정구역	3읍·3면·8동 (통진·양촌·고촌읍 월곶·하성·대곶면 구래·운양·장기본·마산·장기· 김포본·사우·풍무동)	28시·3군
인구	510,549명	14,119,162명
세대 수	205,702세대	6,033,443세대
면적	276.6km ²	10,217km ²
예산(24년) (일반회계+특별회계)	1,559,164백만원	84,968,863백만원 (본청 36,121,056)
재정자립도(24년) (전국평균 45.0%)	33.78%	(본청) 55.09%

※자료: 경기통계, 2023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등 바탕으로 재구성

다. 서울특별시 행정체계 및 관할구역 연혁

서울특별시는 1946년 경기도 경성부가 서울특별(자유)시로 분리·승격된 후 1955년에는 9개 구로 구성되었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이 편입되면서 도시가 확장되어왔고, 현재는 25개 자치구로 구성됨.

자치구 신설은 1995년 광진구·강북구·금천구 등 3개 구 신설이 마지막이었으며, 관할구역은 2015년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계조정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일부가 편입되고, 서울특별시 일부지역이 성남시·하남시로 편입된 바 있음.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1970년대 약 627km²까지 확장되었으나, 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실측에 따른 면적 재조정이 반영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5km²를 유지해오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체계 및 관할구역 등 주요 연혁>

연도	구역변경	행정체계	면적
1946	경기도 경성부를 서울시로 분리·승격	8구 종로·중·동대문·성동·서대문·마포·용산·영등포구	—
1949	—	9구 성북구 신설	268.35km ²
1963	양주·광주·김포·부천·시흥군 일부 편입 (서울시가지 확대에 대비한 확장)	—	613.04km ²
1973	시흥군·고양군 일부 편입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확장)	11구 도봉·관악구 신설	627.06km ²
1975	—	12구 강남구 신설	
1977	—	13구 강서구 신설	
1979	—	15구 은평·강동구 신설	607.28km ^{2*}
1980	—	17구 구로·동작구 신설	607.27km ²
1988	—	22자치구 중랑·노원·양천·서초·송파구 신설	605.40km ²
1995	고양시·광명시 일부 편입 (생활권을 반영한 경계 조정)	25자치구 광진·강북·금천구 신설	605.78km ²
2015	성남시·하남시 일부 편입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계 조정)	—	605.2km ²

*실측에 따른 면적 재조정 등 반영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2022 서울통계연보 바탕으로 재작성

2. 검토의견

가. 총 괄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김포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김포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문제에 해당함.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3)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의 변경과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4)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청문절차로서 관계 지방의회⁵⁾(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중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4)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청문절차의 이행여부를 살피는 한편,

해당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대상이 되는 김포시,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의 지리적 위치, 역사, 생활권, 균형발전 필요성 등 제반사정과 각계각층의 의견, 서울특별시 편입 및 김포구 전환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김포시와 서울시가 편입방안에 합의하여 정부로 건의하여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임.

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김포시는 2023. 12. 20. 행정안전부에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건의하였으나,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아니하였음.

한편, 헌법재판소(94헌마175)가 “의견개진의 기회부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진술된 의견은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은 하되, 입

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심사과정에서는 주민투표(또는 의견청취)가 실시될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고 김포시를 둘러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바람직한 구역변경 방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김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와는 별개로 2023. 11. 24. 제2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⁶⁾을 자체적으로 의결⁷⁾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음.

다.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

경기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 일극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서울 집중을 가속화하여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6) 결의안은 [참고자료 6] 참고

7) 재석 7인, 찬성 7인

김포시의회의 현원은 총원 13명이며, 당시 결의안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김포시의원 6명은 본회의장을 퇴장하였음.

는 김포시와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일부 본칙·부칙 규정을 보완·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서울특별시 주요의견>

구 분	주요의견
본칙	-김포시와의 안정적인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통합지원위원회</u> 를 두도록 하는 규정 신설
부칙	-2030. 12. 31.까지 김포구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 관리권역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신설 -2030. 12. 31.까지 김포구에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은 경기도의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김포시는 ①서울특별시 편입을 통한 동일생활권으로의 복원, ②서울특별시와 김포시의 동반성장 및 국가성장, ③김포시민의 찬성 여론⁸⁾의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편입의 당위성이 있다는 설명임.

반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성북구·중랑구·노원구·은평구 및 경기도교육청은 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계기관 신중검토 의견 세부 사유>

관계기관	세부 사유
경기도	- 서울 집중 가속화, 서울 일극 체제를 더욱 확대하여 지방소멸로 연결될 우려 -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토균형발

8)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자료 4] 참고

관계기관	세부 사유
	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전면 배치
충청남도	-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 메가시티’ 보다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청사진 제시 필요
경기도 교육청	- 김포시는 학생 수, 인구 수 등 교육규모의 지속 증가세에 있으므로, 학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 기타 교육현안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교육공동체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북구	- 제정안은 김포시민은 물론 서울시 전체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보다 신중한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정안은 김포시민은 물론 서울시 전체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관련 시·도·자치구 주민의견 수렴과 편입 후 도시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선행 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저해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이해당사자인 김포시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 필요 - 김포의 서울 편입은 단순한 행정 구역 변경을 넘어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므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반함. - 서울시 내 쪽방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확장이며, 기존 자치구의 현황 미반영 -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사회적 분석도 부족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 필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경기도 김포시 → 서울특별시 김포구)에 따른 변동사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⁹⁾은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도록 하면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는 자치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포시는 ‘시’로서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수 없고, 자치구인 ‘김포구’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김포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¹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으로 동 외에 읍·면을 두고 있으나, 자치구인 ‘김포구’는 읍·면을 둘 수 없으므로, 소속 읍·면 또한 동으로 전환되어야 함.

한편,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될 경우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¹¹⁾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에 따

9)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11)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07호

라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김포시로 편입되는 방안도 실현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해당 법률안과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김포구’의 형태로 편입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김포시의 변동사항을 자치권, 지방재정, 개별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현재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연구 TF’를 구성하여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특별시 통합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024. 12. 31. 발표 예정임.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연구 TF 개요>

☐ 운영목적

- 서울 인접도시 통합 영향 분석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 수립
- 메가시티로 행정체계 개편 시, 서울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서울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 운영방안

- TF 설치 : 서울연구원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4개 분과(메가시티 비전, 시민 생활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서울대도시권 행정체계 개편)로 구성
- 운영기간 : 2023.12.18. ~ 2024.12.31.
- 운영방향 : 편입 및 행정체제 개편에 국한하지 않은,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서울시민 불편 사항 해소와 서울 대도시권 발전 필요성 및 방향 모색

※자료: 서울연구원 제출자료 바탕으로 작성

(1) 자치권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¹²⁾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2]는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4.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6.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다. 도시·군계획용도지구의 입안라.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마.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바. 도시·군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사. 도시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중로(12미터 이상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
|--|

1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단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운영

다.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또한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¹³⁾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도의 사

13)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된 사무로 한다.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무를 일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98조¹⁴⁾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¹⁵⁾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¹⁶⁾하므로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달리 각종 사무특례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며, 김포구로 전환될 경우 해당 특례의 적용이 해제됨과 동시에 일부 사무가 서울특별시의 사무로 전환되어 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줄어들게 됨.

14)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외국국적동포+외국인 수 합산한 것을 말하며(「지방자치법 시행령」§118①), 22년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는 509,813명임.

<김포구 전환에 따른 자치권 변동사항(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강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등록취소 등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등 ·빈집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례 제정	김포구 전환 시 수행 불가
자치구 특례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수행)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도시·군기본계획 등 수립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도시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 정에 관한 사무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지방재정

경기도의 시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는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시·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및 지방세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먼저,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는 자치구가 제외되어 있음¹⁷⁾. 김포시의 경우 2022년, 2023년 각각 1,177억, 1,727억원

17)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

의 보통교부세를 받았으나, 서울특별시 편입 및 김포구 전환 시 보통교부세는 전액 감소하게 됨.

다음, 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모두 관할구역의 시·군과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배분기준 등에 차이가 있음.

2022년 기준 김포시의 조정교부금은 1,601억원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당 평균 조정교부금은 약 1,714억원(김포구 편입 가정시 자치구당 약 1,648억원)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지방세와 관련하여, 경기도 김포시는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민세 등 5개 세목을 징수할 수 있으나, 김포구로 편입될 경우 재산세·등록면허세 등 2개 세목만 징수할 수 있게 됨.

2022년¹⁸⁾ 김포시의 지방세입 합계액은 4,261억원이었음. 같은 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지방세입(구세) 총액은 4조 5,479억원으로, 이를 산술평균할 경우 자치구당 평균 세입은 2,369억원임.

또한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성장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

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18) 자료: 2023 지방세통계연감

므로,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환되어 취득세가 중과¹⁹⁾(重課)되는 등 지방세율 등도 차이가 발생하게 됨.

19)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점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점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점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기준보조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보임.

<김포구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주요 변동사항>

구 분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김포구
보통 교부세	-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매년 자치단체에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지방교부세법 §6①본문)	-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제외 ※자치구의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 산정하여 교부(지방교부세법 §6①단서)
조정 교부금	- 시·군 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30%을 기준으로 배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대상 ·특별·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배분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지방세	- 시(市)세 5개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구(區)세 2개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중과
기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변동에 따른 보조금액 차이 발생 등	

(3) 개별 법령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어 산업단지 신규지정, 4년제 대학 이전,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수시설 신규조성 금지 등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 등 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이전·정비	인구·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적정 관리	한강 수계 수질·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
행정구역	[16시] <u>서울</u> , 인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일부	[14시, 1군] 인천 일부 (강화·옹진·경자구역 등),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연천, 포천, 양주, <u>김포</u> , 화성, 안성 일부, 시흥 내 반월특수지역	[6시, 2군] 이천, 남양주시 일부, 용인 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일부
규제현황	▶ 대학·공공청사 등 인 구집중유발시설 신·증 설 제한 ▶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 중·대규모 대학(수도권 내 이전 제외)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신·증 설 제한	▶ 공업용지 조성 제한 (6만㎡ 초과) ▶ 대학 신설 및 이전 제한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상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으므로, 읍·면 지역에 주로 적용되는 농·어촌 관련 특례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농·어촌 관련 특례로는 대학입학 농어촌 특례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²⁰⁾), 읍·면 지역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특례(「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²¹⁾), 건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2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강보험료 지원(「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²²⁾) 등이 있음.

마. 부 칙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즉시 편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원만한 편입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1) 시행일, 조례·규칙·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이하 “김포구”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규칙 중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하 “예외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중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결핵병원은 제외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김포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김포시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정안은 2025. 7. 1.부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김포구로 하도록 하고(제1조), 2025. 12. 31.까지는 김포시에 적용되던 경기도 조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며(제2조), 김포시 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의 고시·처분 등에 대한 효력을 유지(제3조)하려는 것임.

각각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따른 법적 혼란 및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전제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사이의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관련 입법²³⁾을 참고하

23)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여주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여 종전의 김포시장의 처분 및 김포시장에 대한 신고·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김포시 소속 직원의 지위승계, 채용 등 인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따른 변동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1) 처리사무(자치권) 및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 정 안
제4조(처리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사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본다. 제5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김포시의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김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경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 및 김포시장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부 칙 제4조(경과조치) ④ 종전시 소속의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⑤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창원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⑥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²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무는 시·군과 달리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직접 처리함.

또한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경우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제정안은 김포시가 2025. 7. 1.부터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2030. 12. 31.까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무를 서울특별시가 아닌 김포구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제4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 등 예산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에 적용하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5조).

이에 대하여는 원만한 사무이양의 필요성,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해당 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통일적·체계적 수행 필요성,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국가보조금의 합리적 배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과 조치의 도입여부 및 적용기한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24)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은 교육지원청(김포시교육지원청)이 아닌 시·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한 후,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소속 교육지원청에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보통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교부 단계에 경과조치를 둘 실익은 적다고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광역 단위로만 교부되고 있으므로, 부칙 제5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 정 안
제6조(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김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 지역은 읍·면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김포시장은 이 법에 따른 김포구청장으로 본다.

(제1항·제2항)

전술한 바와 같이 김포시와 같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모두 둘 수 있으나,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음.

제정안은 종전의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동을 김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보도록 하되, 2030. 12. 31.까지는 읍·면에서 동으로 전환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을동이 아닌 읍·면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 읍·면의 동으로의 원만한 전환 필요성,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지방자치체제의 통일성·체계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및 적용기한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제3항)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²⁵⁾는 자치구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새로 구청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공직선거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시의 선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1.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제정안은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김포시장을 김포구청장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입법례²⁶⁾를 참고하여 김포구청장의 임기, 종전의 김포시의회의원, 김포시 내 선거구에서 선출된 경기도의회의원의 지위승계여부 및 임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 정 안
제7조(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김포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를 경기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를 경기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김포구 또는 김포구청장에 관한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26)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⑥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의 의원정수를 여주시의 의원정수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김포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서울특별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김포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김포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김포구에도 적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따른 관계 법령을 정비할 기간을 부여하고, 관계 법령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제정안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²⁷⁾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27)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군위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에 관한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장 또는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군위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대구광역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전술한 바와 같이 읍·면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대학입학 농어촌 특별전형이 적용됨.

제정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4호가목에 따른 대학입학 농어촌 특별전형을 2030. 12. 31.까지 김포구로 편입되어 동으로 전환된 읍·면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의 도입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임.

첫째, 농어촌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법령에서 ‘읍·면’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농어촌의 범위는 (대)학교의 장이 정함.

둘째,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3항²⁸⁾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는데,

최근 발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대상지역을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인

28)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구 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개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구역 개편 대상 지역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 가. 토지등금 설정 및 수정의 승인
 -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
4.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 가.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 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
 - 다. 도시·군계획용도지구의 입안
 - 라.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마.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바. 도시·군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 사. 도시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종로(12미터 이상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운영

다.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참고자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 인구 50만 이상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66조, 제69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관리, 측량업 등록취소, 토지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 반출 승인, 축적변경 승인,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성능검사대행업자의 보고·조사,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징수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 주택관리업자 교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48조, 제52조의2, 제88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실시계획 관계 서류 공람과 실시계획 고시, 공사완료 등 공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변경신고 접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5.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50조, 제51조, 제56조, 제58조, 제66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 분할·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작성·인가,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를 할 자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협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통지 및 가산금 징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시범실시 지정요청,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공원 결정 실효 고시와 취락지구 지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조, 제11조 및 제142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확정·고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을 완화와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8.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3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일 결정·고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9. 「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9조, 제19조의3, 제32조 및 제67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및 수질관리조사, 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보고, 수생태계현황 조사 계획 수립,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 변경과 휴경 등 권고,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22조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록증 발급, 변경등록, 등록사실 통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폐관신고 및 등록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등록취소 및 등록증 수납, 운영현황 및 등록취소사항 보고, 설립 계획 승인취소 및 등록취소·정관명령 시 청문과 중요사항의 자문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

정 요청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제출요청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조례 제정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의견 제출,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농공단지 지정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3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지역진흥산업계획의 수립,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농공단지 개발토지 등의 분양·임대 승인과 농공단지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15.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법령상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16. 「악취방지법」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7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악취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조업정지·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개선권고, 권고사항 불이행 시 조치명령,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시행,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검사 요구,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장의 협조 요청,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징수
17. 「어촌·어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및 지정협의, 지방어항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청취와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18. 「온천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보양온천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19.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 「주택법」 제15조 및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고시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관리와 과태료 부과·징수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29조,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출, 시 종합계획 수립,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보고·감독과 과태료 부과·징수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빛공해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해당사실 통보,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 지원, 사후관리,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징수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사례²⁹⁾

○ 관할구역 변경

구분	의견수렴 방식	제명(시행)
달성군 대구시 편입	달성군의회·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의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95.3.)
웅진·강화군 인천시 편입	웅진군의회·강화군의회 경기도의회·인천시의회 의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군위군의회·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의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23.7.)

○ 자치단체 폐치분합

구분	의견수렴 방식	제명(시행)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06.7.)
통합 창원시 설치	창원시의회·마산시의회·진해시의 회·경남도의회 의결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10.7.)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공주시의회·연기군의회· 청원군의회·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의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12.7.)
통합 청주시 설치	청주시의회·충북도의회 의결 청원군 주민투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14.7.)

29) 자료: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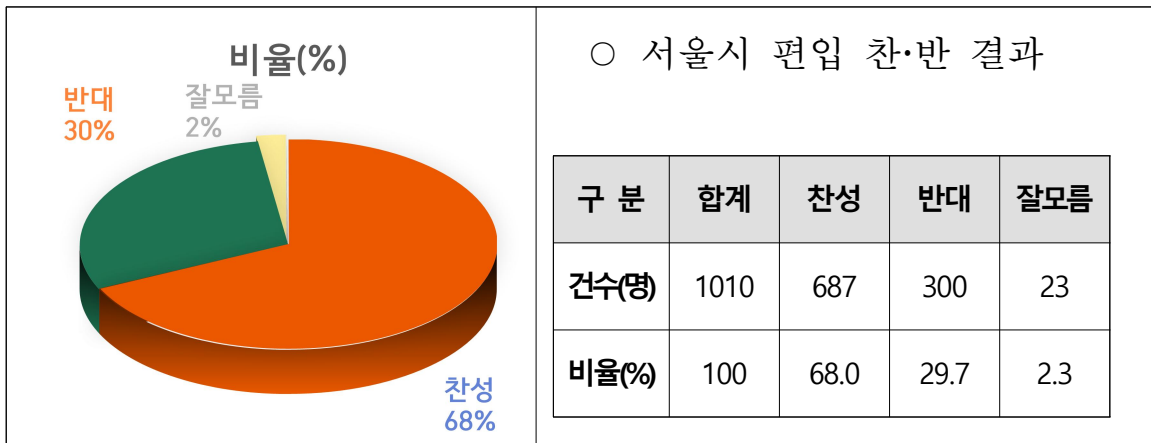
[참고자료 4]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³⁰⁾

(김포시 의회)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서울특별시 편입 관련 김포시민 여론조사
- 조사기간 : 2023. 11. 15. ~ 11. 16.(2일 간)
- 조사대상 : 김포시민 1010명(만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 유선 RDD 100%
- 조사항목 : 거주지, 서울시 편입에 대한 찬성, 반대 등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p$
- 조사기관 : (주)이너텍시스템즈

□ 조사결과



30) 자료: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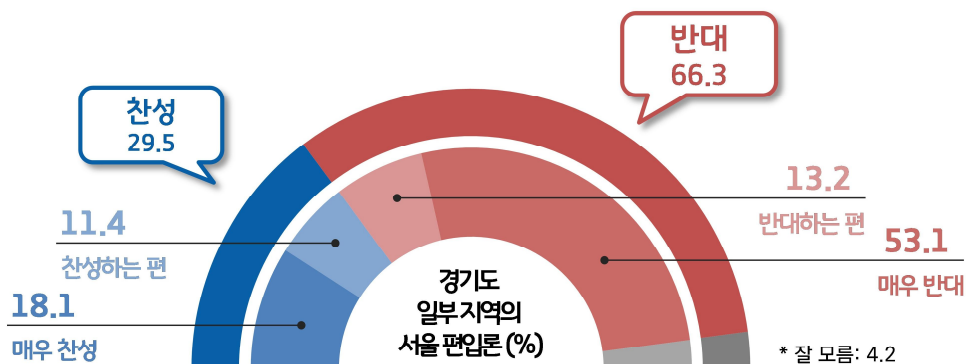
[참고자료 5] 김포시 등 서울근접도시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³¹⁾(경기도 의뢰)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3. 11. 2. ~ 11. 5.
- 조사대상 : 경기도민 3,004명(만18세 이상 남녀, 경기도 31개 시군별 최소 50표본 이상)
- 조사방법 : 무선(70%)·유선(30%) RDD·자동응답(ARS)
- 조사항목 : 김포 등 서울 근접도시를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1.8\%p$
- 조사기관 : (주)리얼미터

□ 조사결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론 [총 응답자 3,004명(경기도민), 단위 %]



31)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자료 6]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의 GRDP 현황³²⁾

구 분	명목 지역내총생산(억원)		지역별 비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만원)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경기도	4,912,983	5,292,108	100.0	100.0	3,652	3,888
남 부	4,056,480	4,377,710	82.6	82.7	4,146	4,417
북 부	856,503	914,398	17.4	17.3	2,492	2,622
수원시	330,393	356,847	6.7	6.7	2,796	3,031
성남시	467,850	503,027	9.5	9.5	5,030	5,432
의정부	73,264	73,886	1.5	1.4	1,625	1,614
안양시	178,257	184,399	3.6	3.5	3,221	3,388
부천시	178,813	179,406	3.6	3.4	2,191	2,227
광명시	79,618	80,745	1.6	1.5	2,615	2,754
평택시	315,819	350,388	6.4	6.6	6,091	6,424
동두천시	17,794	17,930	0.4	0.3	1,922	1,939
안산시	245,773	257,174	5.0	4.9	3,799	3,964
고양시	217,594	226,170	4.4	4.3	2,048	2,114
과천시	43,380	46,505	0.9	0.9	7,243	6,885
구리시	34,523	36,112	0.7	0.7	1,758	1,871
남양주시	126,826	130,999	2.6	2.5	1,805	1,822
오산시	55,869	60,319	1.1	1.1	2,463	2,636
시흥시	167,620	178,018	3.4	3.4	3,465	3,537
군포시	72,524	73,296	1.5	1.4	2,659	2,721
의왕시	39,720	41,277	0.8	0.8	2,465	2,542
하남시	75,032	80,879	1.5	1.5	2,671	2,651
용인시	333,306	353,089	6.8	6.7	3,145	3,302
파주시	209,911	239,322	4.3	4.5	4,603	5,080
이천시	247,801	285,344	5.0	5.4	11,490	12,993
안성시	97,589	102,374	2.0	1.9	5,309	5,471
김포시	143,697	154,601	2.9	2.9	3,172	3,235
화성시	818,802	910,417	16.7	17.2	9,839	10,484
광주시	100,825	108,218	2.1	2.0	2,689	2,829
양주시	68,472	76,367	1.4	1.4	3,048	3,294
포천시	72,082	74,961	1.5	1.4	4,927	5,102
여주시	42,799	46,630	0.9	0.9	3,867	4,186
연천군	17,676	18,795	0.4	0.4	4,101	4,404
가평군	18,361	19,857	0.4	0.4	2,977	3,215
양평군	20,991	24,759	0.4	0.5	1,797	2,079

32) 자료: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보고서(2023)

[참고자료 7] 경기도 내 시·군별 서울특별시 통학·통근 인구 현황
(2020년 기준)³³⁾

현 거주지	서울로 통학·통근하는 인구 수	통학·통근 인구 수 순위	통학·통근 인구 수 비중 (%)	인구수 대비 서울 통학·통근 인구수 비율(%)	인구수 대비 통학·통근인구 순위
계	1,255,518	—	100	—	—
수원시	64,996	8	5.18	5.48	20
성남시	128,860	2	10.26	13.71	8
의정부시	65,431	7	5.21	14.17	7
안양시	67,962	6	5.41	12.36	11
부천시	105,457	3	8.40	12.89	9
광명시	60,859	9	4.85	20.38	1
평택시	6,569	22	0.52	1.22	28
동두천시	4,315	25	0.34	4.57	21
안산시	26,469	17	2.11	4.04	22
고양시	163,298	1	13.01	15.13	5
과천시	12,558	21	1.00	19.86	3
구리시	37,564	12	2.99	19.02	4
남양주시	102,004	4	8.12	14.30	6
오산시	5,859	24	0.47	2.55	25
시흥시	28,968	14	2.31	5.78	18
군포시	25,588	18	2.04	9.35	13
의왕시	17,374	19	1.38	10.61	12
하남시	59,367	11	4.73	20.23	2
용인시	91,605	5	7.30	8.53	14
파주시	29,971	13	2.39	6.44	17
이천시	2,662	27	0.21	1.22	28
안성시	1,796	29	0.14	0.96	31
김포시	60,004	10	4.78	12.66	10
화성시	28,454	16	2.27	3.33	23
광주시	28,506	15	2.27	7.46	15
양주시	15,855	20	1.26	6.88	16
포천시	2,995	26	0.24	2.03	26
여주시	1,272	30	0.10	1.14	30
연천군	564	31	0.04	1.30	27
가평군	1,798	28	0.14	2.88	24
양평군	6,538	23	0.52	5.50	19

33) 자료: 현 거주지별/통근통학지별 통근통학인구(12세이상)(2020년 기준) 바탕으로 직접 작성

[참고자료 8]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
안 찬성 결의안³⁴⁾(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법)을 찬성한다

지난 11월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했다.

김포시는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지하철 5호선과 연장 지연과 GTX-D 등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 사항 해소,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서울시로의 편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 경기도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는 평균연령이 41세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그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분도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남도로 가면 김포가 섬이 되고, 경기북도는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에 남도에도 북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김포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가? 김포가 남도나 북도에 포함되면 어떻게 생활권을 묶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포시는 연접해 있고,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라

34) 2023. 11. 24. 제229회 제1차 본회의 의결

하나, 행정안전부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행조건인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2023. 11. 24.

김 포 시 의 회